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치우 호슌
대만



© Radio Taiwan International

치우 호슌은 대만에서 제일 오래 진행되고 있는 형사 사건으로 최장기간(23년) 구금된 피고인이다. 치우 호슌의 변호사는 최근 이 사건을 일컬어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오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치우 호슌과 10명의 공동피고인은 자신들이 고문을 받고 자백했으며 구금된 첫 4달 동안 외부와 의사소통 할 권리를 빼앗겼다고 이야기 한다. 수사와 신문 과정에서는 변호사 접견을 차단 당하기도 했다.

치우 호슌과 공동피고인들은 나중에 자신들의 자백을 철회했다. 이들은 1987년 발생한 2개의 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연루된 사건들은 9세 소년인 루 쳉의 납치 및 살인, 코 헝 유얀 살인 사건이었다.

고등법원에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폭력과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목록에서 전체 자백을 제외시키지 않고 녹음 테이프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내용이 뚜렷이 들리는 일부분만을 제외시켰다. 자백 내용들은 상호 모순되거나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일치하지도 않았다.

치우 호슌은 결국 1989년 강도, 납치,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12명의 공동피고인 중 오직 그만 사형을 언도 받았다.

치우 호슌의 사건은 재심을 거치며 고등법원과 대법원 사이를 11번이나 왔다갔다 했다. 대만에서는 모든 사형 사건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정되어야 하며 이 경우 대법원은 의문스러운 사건들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회부해 재심을 거치게 할 수 있으며 이때 변호인 측이 새로운 증거를 제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횟수의 제한은 따로 없다.)

>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판사들에게는 제가 무죄라는 것을 밝힐 용기가 없는 걸까요.”**
> 치우 호슌

1994년,루 쳉 사건을 담당하던 2명의 검사와 10명의 경찰관이 고문을 가해 자백을 받아낸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3년에는 경찰이 다른 사형수 한 명이 처형 직전에 자신이 그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고 감추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2009년 고등법원은 10번째 재심에서 치우 호슌과 공동피고인들에게 다시 유죄판결을 내렸는데, 후에 대법원은 여러 가지 사유 중 특히 유죄판결이 강제 자백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에 오류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11번째 재심을 위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2011년 5월, 고등법원은 다시 한번 치우 호슌의 사형선고를 유지했다. 이 판결 이후 치우 호슌은 법정에서 이렇게 밝혔다. “ 나는 누구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판사들에게는 제가 무죄라는 것을 밝힐 용기가 없는 걸까요.” 2011년 7월 28일, 치우 호슌은 대법원 최종 상고심에서 패소했고, 2011년 8월 25일, 검찰총장은 특별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치우 호슌은 언제든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다.

고문 및 부당한 대우

사면 절차 없음

대만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지만 대만 정부는 2009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을 비준하고 규약의 각 조항들이 국내법과 정책, 관행에 반영되도록 하는 법률을 통과 시켰다. 2003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자백이 유죄 판결의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위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자백은 여전히 그러한 증거로 의존되고 있다. 사면과 감형을 요청할 권리는 사면법에 나와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절차들은 마련되지 않았다. 수감자들은 사면 청원의 결과를 기다리다가 처형되기도 한다. 2010년 4월, 대만 정부는 가족이나 변호인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4명의 사형수를 처형하면서 2005년부터 이어온 사형집행 중단의 관행을 깼다. 대만정부는 2000년 이래로 줄곧 사형제도를 폐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왔다.

행동하세요

대만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해주세요.

- 사법적 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치우 호슌(邱和順)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고문과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수사하고,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 얻은 모든 진술이 어떠한 재판에서도 완전히 배제되도록 보장할 것.
- 치우 호슌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 국제기준에 따라 사형을 선고 받은 이들이 사면이나 감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실상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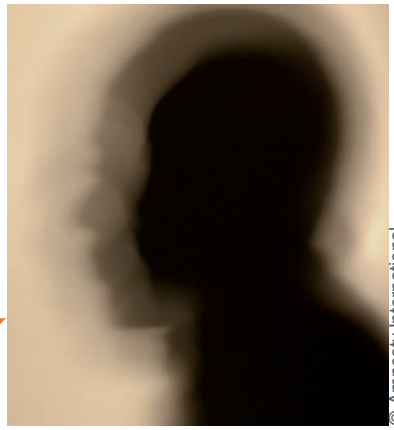
수신자:
법무부 장관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of Justice
No. 130, Sec. 1, Chongqing S.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100, Taiwan
이메일: tyftp@mail.moj.gov.tw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데벤더 팔 싱
인도



© Amnesty International

데벤더 팔 싱(또는 다빈더 필 싱 불라)은 1995년 1월에 위조 서류로 여행을 하다가 뉴델리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경찰은 데벤더 팔 싱이 뉴델리에서 체포된 이후에 1993년 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델리 폭탄 공격에 관련이 있음을 자백(처음 구금되어 변호사를 만날 수 없을 때 진술 내용) 했다고 주장한다.

데벤더 팔 싱은 후에 "육체적으로 거칠게 취급되고 즉결처형(초법적 처형)의 위협을 받고 여러 장의 빈종이에 서명하라고 강요받았다."라고 밝히며 자백을 철회했다. 그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강압과 고문"과 관련해 대법원에 진정했다.

대법원에서 한 진술에서 데벤더 팔 싱은 재판장으로 오는 길에 "법원에 (고문 받은 것에 관해) 어떠한 진술이라도 하게 되면 당장 푼잡 경찰에게 넘겨 즉결 처형 당하게 될 것"이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데벤더 팔 싱은 1987년 테러리스트 및 파괴행위 (예방) 법(TADA)에 근거해 재판을 받았다. 이법은 자의적 체포와 구금, 고문 등에 오용 되어왔기 때문에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고 결국 1995년에 폐지되었다. 법률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1995년 이전 테러 범죄의 혐의자들은 계속해서 이 법률로 기소되었다.

그때 당시 데벤더 팔 싱에게 불리했던 증거는 나중에 철회한 자백뿐이었다. 인도 일반 법률에 따르면 자백은 판사 앞에서 한 것만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며 경찰에게 한 자백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및 파괴행위 (예방) 법은 경찰에게 한 자백도 재판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벤더 팔 싱은 자백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는 치안판사 앞에 출석했었다. 하지만 치안판사는 진술이 그날 녹음된 것이냐는 단 하나의 질문만을 던졌다. 치안 판사는 직접 진술 내용을 보지도 않았으며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경찰관이 배석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백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법원을 납득시켜야 하는 것은 피고인의 몫이다."**
>
> 데벤더 팔 싱의 고문 의혹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 2002년 3월.

2001년 8월, 테러리스트 및 파괴행위 (예방) 법 특별 법원은 데벤더 팔 싱에게 죽음을 초래한 테러 공격, 살인 음모 등 기타 여러 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선고했다. 보통 예심법정에서 선고된 모든 사형선고는 고등법원에 의해 자동적으로 심사를 받게 되어 있으며, 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테러리스트 및 파괴행위 (예방) 법(TADA) 하에서는 단 한번 대법원에만 항소 할 수 있다.

2002년 3월에 대법원은 그의 유죄판결과 사형을 확정했다. 하지만 3명 중 1명의 판사는 그의 유죄를 확정할 증거가 없으며 의문스런 자백이 사형선고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데벤더 팔 싱이 무죄라고 주장 했다.

고문 및 부당한 대우

특별재판소

2002년 12월에는 추가적인 사법심사 요청이 동일한 대법원 판사들에 의해서 2대 1로 기각되었다. 2011년 5월, 인도 대통령에게 제출된 사면 청원도 기각되었지만, 2011년 8월 23일, 대법원은 대통령의 사면 청원 기각 결정이 지체된 점을 들어 감형 청원을 받아들였다.

인도 헌법은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살인, 살인 음모, 마약 범죄, 반테러법 하의 여러 범죄들이 사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인도 법원은 계속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고 있으며 2008년 말 기준 최소 345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인도에서의 마지막 사형집행은 2004년이었는데 그 이전 7년 동안에는 단 한 건의 사형집행도 없었다. 1992년 이래 "반테러법 상의 범죄"로 사형집행된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데벤더 팔 싱을 포함해 8명이 이 법률로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집행의 위기에 처해 있다.

행동하세요

인도 총리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하세요.

-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데벤더 팔 싱(DEVENDER PAL SINGH)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데벤더 팔 싱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고문과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수사하고,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 얻은 모든 진술이 모든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보장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수신자:
총리
Prime Minister
South Block, Raisina Hill
New Delhi 110 001
팩스: +9111 2301 9545
이메일: (다음 링크에서)
http://pmindia.nic.in/feedback.htm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용 브이 콩
싱가포르



© Save Vui Kong Campaign

2007년, 19세의 말레이시아인 용 브이 콩은 2007년에 47그람의 헤로인을 소지하고 있다가 싱가포르에서 체포되었다. 용 브이 콩은 어려서 학교를 그만두고 돈을 벌기 위해 경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 마약 오용법에 따르면 15그람 이상의 헤로인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유죄로 추정되며 그 경우 사형이 의무적으로 부과 된다. 용 브이 콩은 이러한 유죄의 추정을 뒤집을 수 없었고 2008년 고등 법원은 그의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 했다. 법원에는 정상을 참작하거나 낮은 형을 선고 할 재량권이 없었다.

변호인들은 용 브이 콩의 유죄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2009년 4월 용 부이 콩이 항소를 철회했다. 자신이 불교에 귀의했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용 브이 콩은 자신의 신앙에 근거해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사면청원을 했지만 2009년 11월에 사면청원은 기각되었다.

용의 변호사인 M. 라비는 마약 밀매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형이 부과되는 것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사면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용의 사형선고에 항소했다. 하지만 2010년 5월 항소법원은 마약 밀매에 대한 의무 사형부과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이 같이 위헌 소송을 기각한 것은 1980년 이래 3번째 있는 일이었다.

법원은 싱가포르 헌법에 명시된 생명권이 비인도적 형벌 금지에 적용되지는 않으며, 나아가 의무적 사형선고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의무적 사형선고를 비인도적 형벌이나 생명권 침해로 보는 국제 관습법의 규정들을 거부했다.

법원에 제출한 사면 절차에 대한 사법 심사 청구서에서 M.라비는 법무장관이 작성한 이 사건 관련 의견서 때문에 사면권자가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이때문에 절차적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8월 고등법원은 사법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2011년 4월 항소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리면서 용은 사형집행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통령은 내각의 권고를 통해서만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실상 사면에 관한 재량권이 거의 없다. 싱가포르에서 사형에 대한 사면은 1965년 독립이 후 단 6번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적인 사형 선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판사에게 재량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눈을 감고… 그리고 집행해라. 배경이나 기타 사항들은 볼 필요가 없다.”

M. 라비, 용 브이 콩의 변호사

의무적 사형선고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침해

싱가포르는 오랫동안 인구당 사형집행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들어 사형집행 건수가 감소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7년에는 3건의 사형집행이 있었고, 2008년엔 6건, 2009년엔 5건이 있었으며 2010년에는 사형집행이 없었다. 싱가포르에서는 최소 12종류의 범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 할 수 있으며 살인, 폭동, 중대한 총기 범죄, 마약 밀매에는 의무적으로 사형이 부과된다. 싱가포르는 유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이 아니지만 국제관습법에 따라 생명권 존중과 고문 및 부당대우의 절대적 금지에 관한 의무를 진다.

행동하세요

싱가포르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하세요.

- 사법적 혹은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용 브이 콩 (Yong Vui Kong)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들을 개정할 것.
- 의무적 사형선고를 폐지할 것.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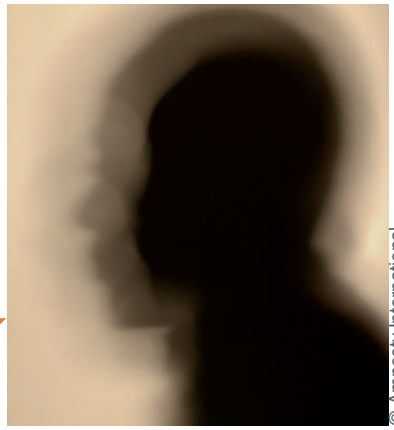
수신자:
대통령
The President
Office of the President
Orchard Road, Istana
Singapore 0922
이메일: s_r_nathan@istana.gov.sg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레자 모하메드 샤 빈 아흐마드 샤
말레이시아


© Amnesty International

레자 모하메드 샤 빈 아흐마드 샤(레자 샤)는 2000년 8월 14일 쿠알라 룸프르 외곽 비공식 정착촌 근처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그는 비닐 봉투를 소지하고 있다가 경찰들이 그를 부르자 그것을 던져버렸다.

경찰은 비닐 봉투를 찾았고 거기에 약 800그람의 마리화나가 있었다고 밝혔다. 레자 샤는 봉투 안 내용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고 법원에서는 경찰이 봉투의 위치를 밝히라며 구타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이후 레자 샤는 브릭스필드 경찰 본부에 구금되었는데 이 곳은 계속적으로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으며 구금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레자 샤는 2년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구금되었다가 2002년 8월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쿠알라 룸프르 고등법원에서 795.3그람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 1952년 위험약물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위험한 약물을 소지한 채 발견된 사람은 "반대되는 사실이 증명될 때까지는 계속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법에 따르면 약물의 소지자는 다른 식으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소지한 약물의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 법은 위험한 약물을 소지하고 있다가 발견된 사람에게는 그러한 약물의 밀매의 죄가 인정되며 이 경우 의무적으로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이법은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기 전까지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에 반한다. 많은 경우 판사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를 입증하는 기소 사실에 근거했다기 보다는 무죄추정 원칙이 거꾸로 적용되는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는 판결을 내리곤 한다.

레자 샤의 경우, 일단 추정된 양만큼의 마약을 소지했다는 점이 예심 법원에 의해서 판결이 난 이상, 법원은 밀매 혐의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을 택할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그렇게 형을 선고 했다.

2006년 푸트라자야 항소 법원은 예심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검찰측이 레자 샤가 봉투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레자 샤에게 밀매 혐의는 제외한 마약 소지죄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리고 18년의 징역형과 태형 10대를 선고 했다.

"이제는 말레이시아가 사형제도를 폐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떠한 형사사법시스템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의 생명을 박탈했는데 나중에 정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나즈리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법무장관, 'The Online Citizen', 기사, 2010년 8월 31일

의무적 사형선고

무죄로 추정 받을 권리 침해

2009년 1월, 검찰측의 항소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연방법원은 레자 샤가 마약 밀매에 대해 죄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항소법원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다시 한번 사형을 선고했다.

레자 샤에게는 더 이상 항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후 레자 샤는 국왕에게 감형을 청원했다. 현재까지 감형 청원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2011년 4월, 말레이시아 내무장관은 1960년 이래 441명이 처형되었으며 2011년 2월 기준 696명의 사형수가 있다고 밝혔다. 사형수 중 대다수는 마약 밀매에 의무적으로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는 1952년 위험 약물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살인죄 역시 의무적 사형선고의 대상이다.
2009년, 말레이시아는 유엔에 마약 밀매에 대한 최고 형량을 종신형으로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유엔 자유권규약이나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자의적인 생명의 박탈과 고문 및 기타 부당대우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에 따른 의무를 지고 있다.

행동하세요

말레이사아 국왕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해주세요.

- 사법적 혹은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레자 샤 (Reza Shah)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특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들을 개정할 것.
- 의무적 사형선고를 폐지할 것.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할 것.

수신자:
국왕 및 국가최고원수
King and Supreme Head of State
Istana Negara
50500 Kuala Lumpur
Malaysia
이메일: via Foreign Minister
(외교부 장관 이메일)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렝 구오관
중국



© Private

해산물 무역업자인 렝 구오관은 2009년 12월 16일 랴오닝성 단동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는 마약 밀수와 밀매에 관여한 범죄조직의 수괴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는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판결은 그와 다른 증인들의 자백과 증언에 근거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나중에 진술을 철회하거나 고문을 받고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밝혔다.

렝 구오관은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고문 때문에 자백했다고 말했다. 그는 2009년 1월 19일에 구금되었는데 3일 밤낮을 특수경찰에 의해 신문을 받으며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3명의 경찰관이 그의 손을 등뒤로 묶어놓고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게 하고 구타했다. 나중에 그들은 종이를 말아 만든 관의 끝에 불을 붙이고 다른 끝을 그의 코에 넣고는 그가 연기를 들이마실 때까지 입을 막아 버렸다. 2009년 1월 이후에도 렝 구오관은 계속 신문을 받았으며 최소 4번 고문을 당했다.

렝 구오관은 2009년 이래로 펑청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첸 동이라는 가명으로 등록되었는데 이는 명백히 그의 변호사와 가족들이 그가 구금된 곳이 어디인지 알아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다. 나중에 변호사와 가족들이 렝 구오관의 소재를 알게 되었지만 면회가 허가되지 않았다.

“나중에 그들은 종이를 말아 만든 관의 끝에 불을 붙이고 다른 끝을 그의 코에 넣고는 그의 입을 막아 버렸다.”

그의 가족은 그의 변호를 위해 4명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첫 번째 변호사는 당국에 의해 사임할 것을 강요 받았고 2,3번째 변호사들은 접견을 거부당했다. 네 번째 변호사는 가까스로 그를 첫 재판 전에 만날 수 있었다.

그의 변호사는 2009년 7월 단동시 검찰에 그의 의뢰인이 구금 중 고문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를 촉구했다. 2010년 8월 랴오닝성 검찰은 고문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결론 지었다.

재판 과정에서 렝 구오관의 변호사는 핵심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증언했던 이들도 재판에서 이전 진술을 철회했다. 검찰은 렝 구오관이 유죄라는 증인들의 증언을 뒷받침해줄 그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2010년 12월 7일,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렝 구오관은 머리, 손목, 다리의 상처를 보여주며 고문을 통해 생긴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피고측이 신청한 56명의 증인 중에는 단 3명만이 증언할 수 있었다. 2011년 5월 6일,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은 “사실관계 불명”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렝 구오관의 사건을 환송시키고 재심을 받게 했다. 재심은 2011년 10월 10일에 시작한다.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

변호인 접견권 침해

중국에서는 마약범죄와 같은 비폭력 범죄들을 포함한 최소 55개의 범죄들이 사형의 대상이 된다. 매년 수천 명이 처형되며 다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형집행건수를 모두 더한 것 보다 많은 사형집행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로 유지되고 있다. 2007년 최고인민법원은 모든 사형선고에 대해서 최종 심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되찾았다. 최고인민법원은 사형선고를 승인하거나 사건을 하급법원으로 되돌려 보내 재심을 거치게 할 수 있다. 당국은 이에 따른 결과로 사형집행 건수가 상당히 하락했다고 공표했지만 이를 실제로 확인할 수는 없다.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선고를 승인한 경우에는 사형집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헌법이 행정부에 "특별사면"권을 부여하지만 개인이 사면이나 감형을 청원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을 포함해 모든 재판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형사사건에서 거의 100퍼센트에 가까운 유죄판결률 보여주고 있다.

행동하세요

중국 당국에 다음과 같이 탄원하세요.

- 사법적 혹은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렝 구오관 (Leng Guoquan)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렝 구오관이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적절한 법률대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 고문과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수사하고,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 얻은 모든 진술이 모든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보장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할 것.

수신자:
랴오닝성 고등인민법원장
President of the Liaoning Provincial Higher People's Court
Liaoningsheng Gaoji Renmin Fayuan
132 Huigongjie, Shenhequ
Shenyangshi 110013
Liaoningsheng
People's Republic of China
이메일: lnfy_mygt@chinacourt.org
또는 lngfjb@126.com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하카마다 이와오
일본


© Private

하카마다 이와오는 1936년에 태어난 전직 복싱 선수였다. 그는 1966년 살인죄로 체포되었고 1968년에 사형을 선고 받았다.

체포 이후에 하카마다는 23일동안(1966년 8월 18일부터 9월 9일까지) 강도 높은 신문을 받았다. 그는 매일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평균 12시간동안 조사를 받았으며 3번정도는 14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았다. 20일이 지나고 그는 "자백"을 했으며 3일뒤 그는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범죄를 자백하는 요지의 여러 문서들에 서명했다. 이후에 하카마다는 검찰이 준비한 더 많은 자백 내용에 서명했다.

하카마다는 재판에서 자신이 구금된 동안 음식이나 물을 먹지 못했고 화장실 사용도 금지 되었을 뿐더러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구타당했다며 자신의 진술내용을 철회했다.

"수사관 중 한 명은 제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서 기록된 자술서에 놓으면서 '여기에 이름을 쓰라'며 명령하면서 소리치고 제 팔을 꺾고 발로 찼습니다. "

하카마다는 재판에 앞서 각기 다른 변호사들에게서 3차례에 걸친 짧은 면담을 했을 뿐이다. 1968년 시즈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들은 검찰이 제출한 하카마다가 서명한 자백이 자의에 의해 서명된 것이 아닐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45개의 서류 중에 단 한 개만이 자의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점이 선포되었다. 그렇지만 그는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선고 받았다. 그의 유죄판결과 선고내용은 1980년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

2007년, 시즈오카 지방법원에서 1968년 당시 하카마다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3명의 판사 중 한명인 쿠마모토 노리미치는 하카마다가 무죄라 믿었다고 밝혔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수사관은 처음부터 그가 유죄라고 생각했고 경찰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가정하에 수사를 진행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기 때문에 구금되어 자백할 것을 강요 받았다."

쿠마모토 노리미치는 그가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하카마다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나는 내 양심의 짐을 더 이상 질 수가 없어서 판사직에서 물러났다. … 나는 굉장한 죄책감을 느낀다."

하카마다의 변호인은 1981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1994년에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008년에는 시즈오카 지방법원에 두 번째 재심이 청구되었고 아직 사건은 계류 중이다.

> **"하카마다가 유죄가 아니라는 점을 다른 두 명의 판사에게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수의 결정에 따라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양심에 반해서 판결문을 써야 했다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생각이 납니다."**
>
> 쿠마모토 노리미치, 시즈오카 지방 법원 판사, 2007년

고문 및 부당대우

변호인 접견권 침해

하카마다는 45년 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일본의 최장기 사형수다. 일본의 모든 사형수들은 격리되어 수감된다. 그는 여동생과 변호인과 소수 지지자들의 방문을 제외하고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립되어 있었다. 그는 정신황폐증의 징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형사사법제도는 유죄판결을 얻어 내기 위해 다이요 칸고쿠(대용감옥) 제도를 통해 얻어낸 자백에 크게 의존한다. 이 제도 하에서 경찰은 변호사 없이 용의자를 최장 23일동안 구금하고 신문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에 고문이나 부당대우를 가해 자백을 얻어내는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진다. 일본은 유죄판결률이 99퍼센트에 달한다. 일본에는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19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살인죄에 대해서만 사형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는 1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2006년과 2010년 사이에 37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사형집행은 모두 비밀리에 이루어졌으며 사형수들은 사형집행 몇 시간 전에 통보 받았고 사형수의 가족들은 사형집행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야 이를 통보 받았다.

행동하세요

일본 법무상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하세요.

- 사법적 혹은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하카마다 이와오(Hakamada Iwao)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하카마다 이와오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른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고문과 부당 대우 및 효과적인 법률대리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수사할 것.
- 다이요 칸고쿠(대용감옥) 제도를 폐지하거나 모든 신문 과정에 전자 기록을 도입하는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이를 개선 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수신자:
법무상
Minister of Justice
1-1-1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77, Japan
팩스: +81 3 5511 7200 (via Public Information & Foreign Liaison Office)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험프리 제퍼슨 에지케 엘레웨케
인도네시아


© Private

나아지리아 출신인 험프리 제퍼슨 에지케 엘레웨케(이하 제프)는 2003년 마약 범죄로 체포되어 2004년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경찰은 제프가 운영하던 식당 직원이 사용하던 방에서 1.7킬로그램의 헤로인을 발견하고 나서 2003년 8월 2일 제프를 체포되었다.

그는 마약의 수입, 수출, 판매 및 밀매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이는 사형 대상 범죄였다. 제프는 체포, 신문, 구금 기간 동안 변호사를 만날 수 없었다. 그는 총 5개월동안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고 구금 되었는데 이는 유엔 자유권규약 14조의 위반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변호사와 연락할 권리를 보장하는 인도네시아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06년에 유엔 자유권규약을 비준했다.

제프는 신문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관들이 마약 소지 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연루시키는 것을 거부하면 자신을 총으로 쏴버리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04년 4월의 재판 기록에는 제프가 어떠한 강압에 처한 일도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예심 판결문에는 "나이지리아 출신인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감시 아래 있다는 내용의 진술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재판 과정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엔 자유권규약은 모든 사람이 관할권이 있는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법정에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은 국가들에게 인종, 피부색, 국적이나 사회적 출신 등에 따른 "모든 종류의 차별 없이" 모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명시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나이지리아 출신의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들" 은 인도네시아에서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감시 아래 있다."**
>
> 풀어 쓴 험프리 제퍼슨 사건의 예심 판결문 중

제프는 2004년 4월 자카르타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의 소지와 판매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 받았다. 2004년 6월 고등법원은 그의 유죄판결과 선고내용을 유지했고 2004년 1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004년 11월,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프의 식당의 전 주인인 찰스 카누(예명 켈리)가 경찰에 자신이 그 식당에 마약을 심어 제프가 체포되고 유죄판결을 받도록 조작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찰스 카누는 나중에 감옥에서 사망했는데, 많은 이들이 찰스 카누가 마약 범죄로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러한 증인들의 진술로 인해 제프 사건에 대한 사법심사가 청구되었는데, 결국 사법심사 청구는 2007년 9월에 기각되었다. 같은 해 대법원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부과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고문 및 부당대우

변호사 접견권 침해

제프는 현재 누사 캄방안 감옥에 수감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고 있다. 그는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하지 않았는데, 자신은 무죄이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 사면을 청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 형법에서 고문을 형사 범죄화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에는 최소 100명 이상의 사형수가 있다. 이 중 절반은 마약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고, 많은 수는 외국인이다. 2008년에 10명이 처형되었지만 이에 비해 이전 10년 동안의 사형집행 건수는 11건이었다. 2010년에는 최소 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2008년 이래로 단 한 건의 사형집행의 기록도 없었다. 2010년 8월에는 사면법이 개정돼 최종 판결 1년 이내에 단 한번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할 수 있게 되었다. 헌법은 고문을 금지하지만 경찰에 의한 고문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은 보통 강제로 받아낸 자백에 의존하고 있다. 사형의 대상이 되는 범죄로 기소된 사람들은 재판 전 최장 231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결여와 부패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행동하세요

인도네시아 검찰총장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하세요.

- 사법적 혹은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험프리 제퍼슨 에지케 엘레웨케(Humphrey Jefferson Ejike Eleweke)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험프리 제퍼슨 에지케 엘레웨케가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고문을 형사범죄 할 것. 고문과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수사하고,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 얻은 모든 진술이 모든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보장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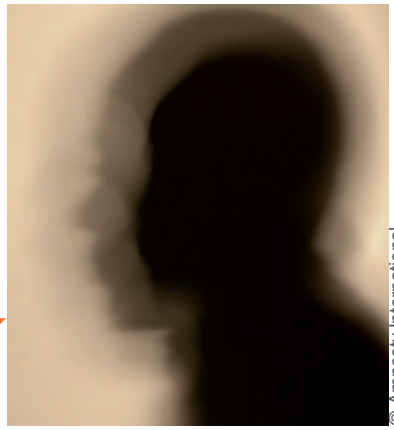
수신자:
인도네시아 공화국 검찰총장
Attorney General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Jl. Sultan Hasanudin No.1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12160
Indonesia
팩스: +62 21 725 0213 / +62 21 739 2576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아프타브 바하두르
파키스탄



© Amnesty International

아프타프 바하두르는 1992년 9월 5일 라호레에서 다른 살인 용의자 한 명과 함께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변호사를 접견하지 못한 채 수개월 동안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다. 수감자들은 보통 경찰에 수주간 갇혀있거나 일부 경우에는 기소를 준비하는 동안 일년 가까이 구금되기도 한다. 이들에게는 법원에 자신의 구금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거나 보석을 청구할 기회가 거의 없다.

1993년 결국 아프타브 바하두르가 법정에 섰을 때 그는 경찰이 범죄현장에 자신을 데려가 지문을 남기게 했다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의 공동피고인인 굴람 무스타파도 자신이 고문당하고 강제로 지문을 남기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이들의 주장을 별다른 언급 없이 기록했다.

아프타브 바하두르에게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는데 그는 의뢰인의 변호를 위한 그 어떤 증거나 증인도 제시하지 못했다. 파키스탄의 국선변호인은 종종 열악한 수준의 교육과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자신의 의뢰인이 별도의 보수를 주지 않는 이상 열정적인 변호를 펼치지 않는다.

> **“경찰은 저를 고문하고 제 손에 기름을 묻히고는 방안 이리저리로 제 손을 움직였어요. 그렇게 해서 제 지문을 얻은 거죠.”**
>
> 아프탑 바하두르

아프타브 바하두르는 1993년 4월 13일, 라호레에 소재한 신속 재판을 위한 제2특별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살인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사형을 언도 받았다. 이 같은 종류의 법원들은 사형이 형벌로 부과될 수 있는 살인죄, 폭력범죄, 비폭력적 정치범죄 등 특정 목록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1987년과 1994년 사이에 운영되었다. 이 법원들은 통상 법률체계 밖에서 운영되었으며 은퇴한 판사가 재판을 주재하고 항소 역시 일반 대법원 재판부 밖에 있는 특별 최고항소법원에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에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며, 심리의 길이, 항소 절차에도 마찬가지 제한이 있다. 1994년 이러한 법원의 설립을 규정하는 법률이 폐지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이러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수감되어 있으며 그런 이들 중에는 아프타브 바하두르처럼 사형수로 살고 있는 이들도 있다.

아프타브 바하두르는 유죄판결에 불복해 최고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다시 한번 그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다. 그의 항소장에는 날짜도 적혀있지 않았으며 단 한 장의 종이에 4가지 요점만 달랑 적혀 있었다. 그 4가지 요점은 검찰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유죄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는 것, 그를 기소하기에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했다는 것, 아프타브 바하두르가 무죄라는 것, 예심법원의 판결이 자의적이었으며 억측에 근거했다는 것이었다.

고문 및 부당대우

특별 재판소

1994년 3월 27일 항소법원은 그의 유죄판결과 사형선고를 확정했다. 아프타브 바하두르는 2010년 대통령에게 사면을 청원했다. 현재 그는 라호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다.

2008년, 파키스탄 대통령은 모든 사형이 감형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파키스탄의 법원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있다. 파키스탄에는 8,000명이 넘는 사형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많은 수가 여러해 동안 수감되어 있다. 사형은 대부분 살인죄에 대해 부과되지만 유엔 자유권규약이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죽음을 초래하지 않는 30개의 다른 범죄에도 부과될 수 있다. 반테러법원은 일반 사법체계 밖에서 운영되며 경찰과 안보기관에 방대한 권력을 부여한다. 파키스탄에는 사법제도와 관련해서 부패, 사법부 독립성 결여, 차별 등 체계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행동하세요

파키스탄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탄원하세요.

- 사법적 혹은 기타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서 아프타브 바하두르(Aftab Bahadur)의 사형집행을 중단 할 것.
- 고문과 부당 대우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 수사하고, 그러한 강압에 의해서 얻은 모든 진술이 모든 재판에서 완전히 배제되도록 보장할 것.
- 아프타브 바하두르가 일반 법원에서 공정재판에 관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절차에 따라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 완전한 사형폐지를 향한 조치로서 모든 사형집행과 사형선고를 중단할 것.
- 유엔 자유권규약 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공정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 정책과 관행을 변화시킬 것.

수신자:
파키스탄 대통령
President of Pakistan
Pakistan Secretariat
Islamabad
Pakistan
Fax: +92 5192 04974

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ADPAN
2011년 12월
문서번호: ASA 01/022/2011 Korean
www.facebook.com/groups/358635539514/

****This updates *When Justice Fails, Thousands executed after unfair trials*, ASA 01/023/2011, and the individual appeal case on China, Leng Guoquan ****

On 23 November 2011 following a re-trial in the case of Leng Guoquan, the Dandong City Intermediate Court sentenced Leng Guoquan to life imprisonment.

Chinese (Simplified)

最新情况

2011 年 11 月 23 日，丹东市中级人民法院在重审冷国权案后判处他无期徒刑。.

Japanese

アップデート

2011 年 11 月 23 日、冷国权の事件の下記の再審が、丹東市の中級法院で行われ、彼に終身刑が言い渡された。

Urdu

تازہ ترین

تئیس نومبر 2011 کو دوبارہ سماعت کے بعد لینگ گوکوان کو ڈینگڈونگ سٹی انٹرمیڈیٹ کورٹ نے عمر قید کی سزا سنائی ہے۔

Filipino/Tagalog

Bagong Kaganapan

Sa ika-23 ng Nobyembre 2011 pagkatapos ng muling paglilitis sa kaso ni Leng Guoquan, hinatulan siya ng habambuhay na pagkabilanggo ng Intermediate na Korte ng Syudad ng Dandong.

Mongolian

Сүүлийн үеийн мэдээ

2011 оны 11 дүгээр сарын 23-нд Дандонг Хотын Дунд шатны шүүхээс Ленг Гуокангийн хэргийг дахин хэлэлцэж бүх насаар нь хорих ял оноожээ.

Thai

สถานการณ์ล่าสุด

ในวันที่ 23 พฤศจิกายน 2554 ได้มีการพิจารณาไต่สวนคดีอีกครั้งสำหรับคดีของ *Leng Guoquan* และศาลชั้นกลางของเมืองต้านถงได้พิพากษาจำคุกเขาตลอดชีวิต

Indonesian

Kabar terbaru

Pada 23 November 2011 ,menyusul pengadilan ulang dalam kasus Leng Guoquan, Pengadilan Menengah Kota Dandong menjatuhinya hukuman penjara seumur hidup.

Hindi

अपडेट

लेंग गुओगुआन के मुकदमें में सुनवाई के बाद 23 नवम्बर 2011 को, डैगडोंग सिटी इंटरमिडियेट कोर्ट ने उन्हें आजीवन कारावास की सजा सुनाई है ।

Malay

Berita Terkini

Pada 23 November 2011 selepas perbicaraan semula kes Leng Guoquan, Mahkamah Perantara Bandar Dandong telah menjatuhkan hukuman penjara seumur hidup ke atas beliau.

Korean

업데이트

2011 년 11 월 23 일, 단동시 중급인민법원은 렝 구오관 사건의 재심에서 종신형을 선고했다.